

2024년 인니수출을 위한 할랄인증 등록지원사업 모집공고

1. 지원대상 : 인도네시아 수출 및 수출 예정 농식품 수출업체

신청 제외 대상

- '수산물', '연초류', '비식품'은 지원 제외
- 지원대상 품목은 주된 원료가 농·임·축산물로 분류된 것이어야 함.
- 공고일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산물 수출업체 지원 제외
- 지자체, 중기부, 한식연 등 유관 기관과 중복지원 불가
- aT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및 글로벌농식품성장패키지(공모형) 선정업체 신청 불가

2. 지원내용 : 할랄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 * 지원항목 등 세부내역은 정산기준 참고
- * 컨설팅 기관에 인증취득 지원 의뢰 시 aT 또는 한식연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을 활용

3. 대상인증 : 인도네시아 수출을 위해 요구되는 인증

- ※ KMF, KHA, BPJPH 인증
- ※ '22.1~'24.6월까지 인도네시아 수출실적 필요
- ※ 없을 경우 '24년 인도네시아 수출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4. 지원한도 : 20백만원

(사업계획 신청 시 업체명, 인증종류 등 타 기관에 정보제공 동의 필수)

5. 모집기간 : `24.6.28.(금)~`24.8.14.(수) 18시까지 (예산소진시 조기모집 종료)

- * '24년 공고일 이전에 인증취득을 완료한 경우 지원 가능('24년 취득건)
- * '24년 인증취득 완료(인증서 발급일 기준)건만 정산 가능
- * 매월 15일까지 제출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해당 월말에 선정 통보
- * (예시) 7월 13일 신청시 7월말 선정 통보, 7월 16일 신청시 8월말 선정 통보

6. 신청방법 :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내 온라인 신청

- * 로그인(신규업체 : 회원가입) → 상단메뉴[수출지원사업신청] → 해외인증등록 지원사업 모집공고 [사업신청] 버튼 클릭(기본정보 입력, 사업신청서, 해외인증 등록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및 업로드)
- * 무역통계정보 동의서 미제출 업체 온라인 동의 필수
- * 제출서류 : 신청서(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인지조서, 해외인증 등록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7. 선정철회 : 선정통보 후 15일 내 착수증빙 미제출시 선정 철회

* 착수증빙 : 인증기관 접수증, 사업표준계약서, 계약금 입금내역, 대행기관 통장사본 등

8. 정산신청 : 2024.11.30.까지 정산 서류 제출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내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정산서류 입력
- 정산방식은 월 단위 수시 정산이며, 인증 및 비용집행 완료 후 1개월 이내 정산신청
- '24.9.30. 이후 사업포기시 차년도 사업 신청제한, 지원년도 포함 2년간 수출실적 없을 경우 차년도 부터 지원 제한

9. 사업절차

aT본사	인증지원 대상업체 모집공고 및 안내
수출업체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통한 온라인 신청
aT본사	선정업체 평가 후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 내역을 관할 aT 지역본부에 통보
aT지역본부	선정결과를 해당 업체에 통보 및 선정업체 사후관리
수출업체	단계별 진행사항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내 입력
aT지역본부	사업 착수여부 확인 / 선정 통보 후 15일 이내 착수증빙 미제출 시 선정 철회 (본사에서 선정 철회 통보 문서 시달)
수출업체	인증취득 완료 후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통한 정산서류 온라인 제출
aT지역본부	증빙 검토 후 정산

10. 관련문의 : 수출기업육성부(061-931-0863) 또는 아래 aT 관할 지역본부 담당자

관 할	연락처	담당자	관 할	연락처	담당자
서울경기	031-8060-6013	김채원	강 원	033-920-1544	이은정
대전세종충남	042-389-5017	박민정	충 북	043-902-9531	정나현
광주전남	062-940-7015	김영신	전 북	063-904-5871	김은희
대구경북	053-218-4906	곽중문	경 남	055-608-5832	원소현
부산울산	051-947-1086	이정용	제 주	064-900-8660	한수진
인 천	032-272-3012	곽다인			

2024. 6. 28.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참고 1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선정평가표(안)

1. 적합성 확인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인증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득(예정)인증의 지원대상 적합여부 * KMF, KHA, BPJPH만 신청 가능 	적합	부적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득(예정)인증 품목의 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업체의 지원대상 적합여부 * 타기관 유사사업 중복참여 여부 인도네시아 수출실적 보유 또는 수출예정 증명 가능 여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여부 직전연도 9.30일 이후 사업포기 또는 정산미신청 업체 해당 여부 	적합	부적합

2. 계량 평가(100점)

평가내용	배점	평가기준				
'23년 총매출액(원)	25	50억원 이상	30억 이상 50억 미만	20억 이상 30억 미만	10억 이상 20억 미만	10억 미만
		25	21	17	13	9
'23년 수출실적*	25	50만불 이상	30만불이상 50만불미만	10만불이상 30만불미만	10만불 미만	실적 없음
		25	21	17	13	9
수출증가율 (‘23년수출액-‘22년수출액)/ ‘22년수출액 *100	20	10% 이상	8% 이상 10% 미만	4% 이상 8% 미만	4% 미만	0% 이하
		20	16	12	8	4
'23년 인도네시아 수출실적*	15	5만불 이상	3만불이상 5만불미만	1만불이상 3만불미만	1만불미만	실적 없음
		15	13	11	9	7
인도네시아 수출증가율 (‘23년인니수출액-‘22년인니수출액)/ ‘22년인니수출액 *100	15	10% 이상	8% 이상 10% 미만	4% 이상 8% 미만	4% 미만	0% 이하
		15	13	11	9	7

* 수출실적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 활용, 수산실적 제외

3. 선정기준 : 계량 평가결과 60점 이상 충족, 예산 범위 내 고득점 순으로 선정

참고 2 세부정산기준(안)

가. 기본제출서류

- 기본제출서류 : 인증서 사본, 정산신청서 및 세부내역서(지정양식), 업체통장사본
- 대행사를 통해 인증 취득 시 대행계약서, 세금계산서, 비용 납입(업체→대행사) 완료 영수증(은행발행 계좌이체증 등) 제출

나. 인증취득비용 정산 세부항목 기준

구분	세부항목	기준	제출증빙
인증 취득 비용	심사비 및 등록비	○ 심사원의 인건비, 인증기관의 행정처리비용 등이 포함된 비용	① 인증기관 발급 인보이스 및 영수증 (은행 발행 계좌이체증 등) * 인증기관 → 업체 발행 인보이스,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 사본
	실사비 (항공료)	○ 해외에 위치한 인증기관 실사단의 국제선 왕복 항공료 (economy) - 최대 2인	① 항공티켓 또는 e-ticket ② 여행사 인보이스 및 영수증 (카드전표, 은행발행 계좌이체증 등) ③ 실사단의 한국체류 세부일정 * 실사단이 체류기간 중 타 업체 방문시 항공료를 전체 방문업체 수로 나누어 해당분만 지급 (1회 방한 다수 국내업체 실사 시)
	제품 시험비	○ 인증 요구사항에 따른 제품분석비 및 시료운송비 (운송비 16만원 한도)	① 시험기관 발행 세금계산서 (인보이스, 영수증, 카드전표, 은행발행 계좌이체증 등) ② 시험기관 발행 제품시험결과서 ③ 운송사 발행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사본 (인보이스 및 영수증 등) * 인증 등록 요구사항에 따라 인증기관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제품분석비만 정산 (필요시 증명자료 제출)
대행 비용	통역 및 서류번역	○ 서류심사를 위한 서류번역 및 현장심사를 위한 통역비	① 통번역사 프로필 ② 통번역비용 지출증빙 (거래명세서, 영수증, 카드전표, 은행발행 계좌이체증 등) ③ 통역결과보고서(현장사진 등) ④ 번역결과물(원문 및 번역본) * 매 건당 증빙자료 필수 제출 * 컨설팅비와 중복신청 불가
	컨설팅비	○ 인증 취득을 위해 컨설팅 기관에 의뢰시 발생하는 컨설팅비용	① 컨설팅보고서 ② 컨설팅기관에서 발급한 지출증빙 (인보이스 및 지출증빙 사본) * 인증별 400만원 한도
	교육비	○ 해당 인증취득을 위한 교육에 한해 인증별 최대 2인 지원	① 교육결과보고서(사진포함) ② 교육기관 이수증 ③ 지출증빙 사본 * 집합교육은 참석인원수/교육비용*2인으로 산출로 참석자 명단제출 * 컨설팅업체에서 실시한 교육은 신청 불가

구분	세부항목	기준	제출증빙
대행비용	예비심사비	○ 인증기관에서 수행한 예비심사 비용 (심사 조건에 적합한 지를 본심사에 앞서 심사하는 것)	①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거래명세서 및 지출증빙 사본 * 예비심사 : 심사조건에 적합한 지를 본심사에 앞서 심사하는 것 * 컨설팅기관 없이 자체 인증 취득 업체에 한함 * 컨설팅비와 중복신청 불가
	인증대행수수료	○ 인증대행(인증신청 및 접수 등)을 위한 수수료	① 인증대행기관에서 발행한 대행내역서 ② 인보이스 및 지출증빙 사본 * 인증별 200만원 한도 * <u>해외에 소재한 인증·등록기관 관련 직접적 신청이 불가한 경우 적용</u>
정산불가항목	○ 시설설치비, 물품구입비, 지원업체의 해외현지 방문비용, 식비, 유류비, 선물비, 출장비(운영비), 렌터카 비용 등 인증 취득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거나, 세부정산기준 지원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은 정산 불가 ○ 실제 비용 지출을 증명할 적합한 증빙이 없는 항목 정산 불가 ○ 국내 발행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항목은 정산 불가 ○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수행한 하람·동물성성분 분석건 신청 불가		
기타사항	○ 대행비는 인정된 총 소요비용의 50% 한도 내 정산 ○ aT 지역본부는 비용 집행 검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은 정산 불가 ○ 영양성분검사, 제품시험분석비 등은 인증·등록에 <u>필수요건인 경우</u> 에 한해 지원 (필수요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환율은 실제 비용 지출(송금) 당시 적용된 환율로 인정 ○ 정산금 지급 시 업체 법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사업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개인계좌로 송금해야 할 경우 담당자 승인절차 필요		

[참고] 지원업체 정산 승인금액 산출 절차

- ① 인증취득비용 및 대행비 확인 : 인증비(6,300천원)/대행비(4,800천원)
 - ② 대행비 한도 계산('총 소요비용'의 50%) : [11,100천원 × 50% = 5,550천원]
 - ③ '최종 정산승인금액(인증취득비용 + 50% 한도 적용된 대행비)' 산출
 - ④ '최종 정산승인금액'의 70%를 지원업체에 지급(연간지원 한도내)
- ☞ 정산승인금액 = 소요비용[6,300천원(a) + 4,800천원(b)] x 70% = 7,770천원
- * 정산 지급액은 신청 시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에 입력한 비용을 기준으로 산출된 배정예산한도를 넘을 수 없음

< 항목별 소요비용 예시 >

구분	정산세부항목	소요비용(원)	승인대상 금액
인증비 (A)	심사/등록비	5,000,000	승인대상 인증비(a) 6,300,000원
	실사비	800,000	
	제품분석비	500,000	
	소계	6,300,000	
대행비 (B)	통역/서류번역	800,000	승인대상 대행비(b) 4,800,000원 * 컨설팅비 400만원 정산 신청한도 적용 * 통역 및 서류번역비와 컨설팅비 중복불가
	컨설팅비	5,000,000	
	교육비	800,000	
	소계	6,600,000	
Total (C)= (A) + (B)		12,900,000	(6,300천원 + 4,800천원)x70% = 7,770천원